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25.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 2019년 6월 5일
-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19년 6월 11일
- 라. 상정일자 : 제2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2019. 6. 1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복지국장 장종연)

가.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로 변경

- “중증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용어 변경(안 제1조 외)
- “중증 장애인”의 정의 조항 삭제(안 제2조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정옥)

- 본 건은 조례의 근거 법령인 「장애인복지법」 개정(2019. 7. 1. 시행)에 따라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은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 안 제2조제2호의 “중증 장애인”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 그 밖에 “중증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용어 변경을 하였음.
- 본 조례안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조례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입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14 호
----------	---------

제출연월일: 2019. 6.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로 변경
- 나. “중증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용어 변경(안 제1조 외)
- 다. “중증 장애인”의 정의 조항 삭제(안 제2조제2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 라. 입법예고(2019. 5. 2. ~ 5. 22.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로, “중증장애인의”를 “장애인의”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중증장애인 사례관리”란 중증장애”를 “장애인 사례관리”란 장애”로 한다.

제3조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로 한다.

제7조 중 “중증장애”를 “장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u> <u>자립생활 지원 조례</u></p>	<p><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u> <u>자립생활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중증장애인이</u>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u>“중증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u></p> <p>3. 4. (생 략)</p> <p>5. <u>“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u></p>	<p>제1조(목적) ----- <u>장애인</u>----- ----- ----- ----- ----- -----.</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3. 4. (현행과 같음)</p> <p>5. <u>“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u>----- ----- <u>장애인의</u> ----- -----</p>

스를 제공하고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 8. (생략)

9. "중증장애인 사례관리"란 중증장애인 중 시급하거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위해 면밀한 사정, 정기적인 상담, 지역 자원 연계, 사후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제7조(위탁 및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6. ~ 8. (현행과 같음)

9. "장애인 사례관리"란 장애-----

-----.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장애인-----

제3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제7조(위탁 및 지원) -----

-----장애-----

-----.